

예 산 총 칙

2008년도 [본예산]

* 제1조 : 2008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 산 총 액	일시 차입 한도액
총	계	390,669,617	11,720,150
일	반 회 계	305,424,497	9,162,740
특	별 회 계	85,245,120	2,557,410
	의 료 급 여 기 금	1,503,450	45,110
	주 민 소 득 지 원 자 금 운 영 관 리	504,288	15,130
	저 소 득 주 민 생 활 안 정 자 금	439,476	13,190
	농 공 지 구 조 성	7,003,000	210,090
	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3,048,000	91,440
	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	1,407,600	42,230
	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	1,113,526	33,410
	주 택 사 업	746,275	22,400
	기 반 시 설	830,430	24,920
	수 질 개 선 관 리	2,765,062	82,960
	사 포 지 방 산 업 단 지	39,233,000	1,176,990
	상 수 도 사 업	9,728,633	291,860
	하 수 도 사 업	16,922,380	507,680

- 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‘세입·세출예산’ 과 같다.
- * 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‘채무부담행위조서’ 와 같다.
- * 제4조 : 계속비사업은 별첨 ‘계속비사업조서’ 와 같다.
- * 제5조 :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‘명시이월사업조서’ 와 같다.
- * 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4,878,095천원 으로 한다.
- * 제7조 :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.
- * 제8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